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지원사업 모집공고

전통시장의 백년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우수한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전통시장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5년 7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기구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아래 정의 및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백년시장 정의	
◆ 백년시장이란, 지역 내 「전통시장」 중 경제·문화·사회적 랜드마크로 재해석되어 향후 백년(1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시장	
○ 단계별(연차별) 백년시장 육성방안을 바탕으로 역사적 전통이 시장에 스며들도록 환경 개선, 수익 창출 연계 등 백년시장 육성 추진	
주요 추진 내용	
①단계 스토리 찾기	▪ 오랜 세월 속 백년시장이 가진 지역내 경제·문화·사회적 영향력을 상징성 있게 스토리화 * 로컬크리에이터를 통해 100년의 역사와 지역 내 가치를 스토리화하고 상징성 부여
↓	
②단계 환경 개선	▪ 인테리어*, 테마거리** 등 경제-문화-사회적 복합공간 구성 * 역사적 사건 등에 맞춘 콘셉트를 반영한 동일한 간판과 매대를 구성 ** 역사적 스토리가 반영한 첨단 조형물과 함께 역사 체험형(의·식·주 전통 이벤트 등)이 가능한 테마 거리 조성
↓	
③단계 상품 확대	▪ 연계된 스토리 및 주변 상권과 연계되는 의식주 체험*, 굿즈, 래시피 등을 개발하여 백년시장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 * (의) 한복 제조과정 체험 프로그램과 상인회의 한복 등 대여 (식) 떡류, 부침개, 전통주 등 만들기, (주) 한옥 체험 등 전통숙박 연계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문화유산으로서 향후 백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전통시장을 발굴, K-컬처의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전통시장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세부요건은 "2. 신청자격" 참조

-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③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지원내용** : 백년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화·역사적 가치를 브랜드화하여 시장에 녹여낼 수 있도록 단계별 육성 추진
 - **(1단계 : 스토리 찾기)** 향후 백년을 이어갈 수 있는 역사, 시장의 상징성을 살린 브랜드* 구축, 역사·문화적 특색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등
 - * 역사·문화적 사건·인물을 스토리로 만들고 K-컬처와 연계 가능한 테마 발굴 등
 - **(2단계 : 환경개선)** 백년시장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활용하여 인테리어, 테마거리 조성 등 지역 랜드마크 도약 기반 마련
 - **(3단계 : 상품개발)** 백년 브랜드를 활용한 굿즈, 특화 상품, 체험 행사 개발 등 백년시장 지속가능한 수익원 창출

□ **선정규모** : 2개 시장(지자체) 내외

□ **지원예산** : 선정 시장(지자체) 당 최대 40억원(최대 3년, 국비:지방비 5대5)

□ **사업기간** : 최종 선정일로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별(3개년)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실시 예정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지자체(기초 및 광역 모두 가능), 전통시장, 상권관리기구 등으로 구성된 지자체의 컨소시엄 거버넌스 구성

컨소시엄 거버넌스 정의

- **백년시장의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대표가 되어 사업신청
- **(컨소시엄 구성)** 상권관리기구를 포함한 지자체, 상인회가 조직된 전통시장 등
 - * 전통시장 상인회, 지자체, 로컬크리에이터, 대학, 민간기업, 지역연구원 등 지자체 자율

백년시장 컨소시엄

지자체 및 산하기관 (필수 사항) 컨소시엄 구성, 지방비 확보, 운영기관 역할 수행 등	전통시장 상인회 (필수 사항) 사업 추진 상인 협조 등	로컬 크리에이터 (자율 사항) 역사 콘텐츠 발굴 및 확산 등	민간 기업 (자율 사항) 시장과 상생협력 인프라 조성	대학 (자율 사항) 지역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시장 활성화	α (자율 사항) 전통시장 및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기관
--	--------------------------------------	---	-------------------------------------	--	---------------------------------------

- ◆ 지자체 : 협약서 제출이 가능한 지자체(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모두 가능)
 - * 최종평가에 따른 협약 체결 전까지 반드시 **지자체 매칭 협약서 제출 필수** (협약서 미제출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세부 신청요건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전통시장

① 70년 이상된 전통시장

- * 전통시장 개설 등을 확인하는 지자체 확인서 등 증빙 자료 제출

② 컨소시엄 거버넌스 구성

- (필수사항) 전통시장 상인회, 지자체, 운영주체(예정)*

- * 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출자출연법을 근거로 설립된 기관 및 임시조직, 전통시장 특별법을 근거로 설립된 상권관리기구 등

- (자율사항) 로컬크리에이터, 대학, 민간기업, 지역연구원, 상권기획자 등

③ 전통시장 상인과 임대인간의 상생협약 동의율 50% 이상

④ 전통시장 상인 동의율 80% 이상

⑤ 기초요건

- 전통시장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45% 이상인 곳
-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 온누리상품권 지류형 가맹률 80% 이상, 카드형 가맹률 75%이상(모두 충족)

□ 제외대상 : 공고일('25. 7. 2.) 기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구분	세부 요건
신청 제외대상 (컨소시엄 구성원별)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단체)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2]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 참고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단체) *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 단, 추후 사업비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단체) * 단, 신청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지원) 가능 ④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단체) ⑤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자(단체) ⑥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단체)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단체)
신청 제외대상 (상인회)	① 공고일 기준('25.7.2.)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25.8.7.)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 ② 접수 마감일('25.8.8.) 기준 중기부,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③ 접수 마감일('25.8.8.) 기준 최근 1년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중도 포기한 시장 ④ '25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중인 시장

- * 선정 후 신청제외 대상임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취소 처리 될 수 있음
- ** 최종 선정前 제외요건 확인서류 제출 요청 예정

3

지원내용

□ 지원조건 : 백년시장 육성을 위한 지원금 3년간 최대 40억원*

* (총 사업비 기준) 1년차 8억, 2년차 20억, 3년차 12억 지원하되 연차별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 차등 지원(국비)

○ 국비 50%, 지방비 50%를 기본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국고보조율) 최대 ±10% 차등 지원

* 추후 국비(국고보조율)가 40%로 확정되는 경우, 지방비 추가분 10%는 추경 편성

○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비 조정 될 수 있음

□ 추진과제별 사업계획 수립 가이드

구분	지원내용		
지역 문화를 이끌어가는 전통시장으로 업그레이드	관광요소 개발	특화거리 조성	
		체험서비스	
		문화공연·미디어아트	
		캐릭터·굿즈	
	관광 상품화	관광교통연계	
		관광상품 개발	
		행사 운영(팝업스토어, 야시장 등)	
	지역 문화 확산	문화·예술 축제(유명작가 기획전, 지역문화, 박물관·미술관 등)	
		지역 예술 소통 창구 전환	
지역민과 함께하는 복합 소통공간으로 전환	지역 내 교류의 장	지역주민 요구 기능 접목	
		공유형 숙박 및 오피스 운영	
		지역 내 공익형 단체 공간 제공	
		예술가 공간	
	지역 내 순환의 장	민간기업 팝업스토어 유치	
		볼런투어 프로그램 운영	
		지역 공공기관과의 동반관계 구축을 통한 공간활용	
	지역 내 가치의 장	로컬 협의체 운영을 통한 가치 발굴	
		지역 방송체계를 활용한 가치 공유	
		어린이 등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가치 확산	
	지역 경제 내 글로컬 전통시장으로서 영향력 향상	해외 관광객 유입	글로벌 백년시장으로 브랜드화
			해외 현지에서의 관심유도를 위한 홍보체계 마련
백년시장 내 외국인 쇼핑 여건 개선			
해외 선진시장과의 인적·물적 교류			
민간 협력		백년시장 전용관 운영	
		빈 점포를 활용한 복합공간 구성 (청년상인 유입, 창업 인큐베이터 등)	
핵점포로의 유도		우수상인 중심의 핵점포 전환 유도	

- **컨소시엄 거버넌스 역할** :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전통시장을 랜드마크로서 **경제·문화·사회 가치 향상 계획** 마련(자유서식)
 - * 사업계획의 내용 : 경제 문화 사회적 요소를 업그레이드할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랜드마크로서 지속적인 성장(향후 100년동안)하기 위한 사후 관리 방안제시

4	신청 및 접수
----------	----------------

- **공고일** : 2025년 7월 2일(수) ~ 8월 8일(금)
 - 신청기간 : 2025년 7월 2일(수) ~ 8월 8일(금) 제출 완료 필수(문서 도달 기준)
 - *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신청 완료하는 것을 권고
- **신청방법** : 온나라 공문접수*(지자체(광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광역자치단체별 **1곳**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등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pdf파일로 제출

구분	제출서류명	비고
필수	1 [붙임1]특성화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신청서	[붙임] 작성 후 첨부
	2 [붙임2]사업계획서	
	3 [붙임3]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붙임4]컨소시엄 참여 서약서	
	5 [붙임5]컨소시엄 구성	
	6 [붙임6]지방비 확보 협약서	
	7 [붙임7]특성화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추진 동의 및 상생협약서	
	8 [붙임8]특성화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동의자 명부(토지·건물)	
	9 [붙임9]특성화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동의자 명부(상인)	
	10 [붙임10]상인현황	
	11 [붙임11]전통시장 개설 확인서 * 전통시장 개설 등을 확인하는 증빙자료 제출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증서, 대규모점포등록증, 상인 회등록증 등) 제출	
해당시	12 [붙임12]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 현황	개별 증빙 후 첨부
	13 [붙임13]투자협약서	
	1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컨소시엄 구성원 내 민간기업 포함 시	
	15 화재공제(보험)가입 확인서류	
	16 협동조합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말소사항포함, 제출용, 최근 1개월 이내	

- ◆ **유의사항**
- 1)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혹은 유효기간이 모집마감일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2)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동 공고 내 **게시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5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총 6단계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

- 기초평가(공단) → 현장평가(지방청, 공단) → 서류(발표)평가(외부평가단) → 타당성 검토(공단) → 선정평가(외부평가단) → 선정심의(중기부)

① 기초평가	② 현장평가	③ 서류 및 발표평가	④ 타당성 검토(2배수)	⑤ 선정평가	⑥ 최종선정
신청서류 검토 등을 통한 적격여부 판단	신청 지자체 면담 및 시장 현장 확인 등	사업계획서 기반 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외부 용역을 통해 사업계획서 타당성 등 검토	외부 용역 검증을 거친 사업계획서 기반 발표평가	최종 중기부 심의

* 신청자격 요건검토는 상시 진행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 공고문, 세부추진계획, 세부 단계별 평가지표 등은 지자체 대상 별도 사업설명회('25. 7월 중, 3회) 예정

□ 우대사항

- (가점 적용)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미제출 시 추후 별도 보완절차 없이 불인정 처리

① (상생협약) 전통시장 상인과 임대인 간의 상생협약 동의율*

* 70% 이상 1점, 80% 이상 2점

② (화재공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2에 근거한 화재공제사업, 민간화재보험의 가입률*

* 70% 이상 1점, 80% 이상 2점

③ (협동조합) 백년시장 보조 운영조직인 '협동조합' 설립이 완료된 곳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 등기 완료한 곳

□ 향후 일정(안)

※ 추진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본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마감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
 - * 제출서류 등에 누락·착오가 있더라도 신청마감일 이후 수정·보완·교체 등 일체 불가
 - ** 평가자료는 마지막 제출본으로 평가 진행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해 사업 등록→교부→집행→정산→반납→정보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

- 정부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정부보조금)을 필히 제출,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협약 체결 후 운영비에서 사용 가능
- 사업비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회계연도 기준 사업종료 1개월 내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제출 필수,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협약 체결 후 운영비에서 사용 가능
- '간접보조사업자'로서 ①e나라도움 필수사용(사업비 흐름 상시 모니터링), ②보조금관리법·국가계약법·청탁금지법 등 준수
- 동 사업 신청은 지자체가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평가일정 및 결과는 개별통지(전자메일 등)하며, 미확인 및 착오로 인한 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반드시 공단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될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컨소시엄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 단, 사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불참 시 공단과 협의 후 조정 가능(증빙 제출)
 - ** 선정평가 결과 적합한 대상이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기업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 이후라도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모방·표절이 확인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등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의 수시·중간·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운영 세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 지자체 등에 있음
- 지원시장 선정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중기부·지방중기청·공단본부·공단지역본부의 사업계획 수정·보완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원시장 선정 취소 및 사업비를 축소할 수 있음
- 사업관계자간 갈등으로 일정기간 사업이 진행 되지 않을 경우 지원시장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공고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운영 세칙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음

7

문의처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팀(042-363-7662, 7672)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대상 신청서 작성요령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 작성 원칙
 -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제시한 양식에 의거 작성하고, 임의로 양식변경 지양
 - 용지여백 설정: 위쪽10, 아래쪽10,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15, 꼬리말15
 - 파일명(예):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_대전_중구_000시장.pdf
- 제출 방법
 - 온나라를 통한 공문 접수

2. 사업 계획서 작성방법

- 계획서는 해당양식을 준수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15장 이내로 작성 (붙임서류 미포함)
- 자료산정(data) 기준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 목차 및 페이지(page) 반드시 기재
- 문체는 서술식이 아닌 개조식으로 작성
-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량적·계량적인 표현 위주로 작성 → 제출서류 중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검증이 필요한 사항은 첨부자료 별첨
- 계획서는(사업계획, 성과관리 등) 연차별 작성이 원칙
- 지정된 내용 및 양식 이외에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로 작성하거나 추가 표시를 하여 작성·제출 가능

☞ 신청양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가능

【붙임 1】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신청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신청서					
시 정 장 보	시 장 명				
	개 설 일		등 록 / 인 정 일		
	시 장 유 형	<input type="checkbox"/> 상설시장 <input type="checkbox"/> 도매(형)시장 <input type="checkbox"/> 5일장(장날: ,)			
	주 소	※ 반드시 우편물 수령 가능한 주소 입력			
상 인 회 정 보	상 인 회 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전 화			팩 스	
	상 인 회 장 명		핸 드 폰	※ 반드시 기재	이 메 일
	실 무 자 명		핸 드 폰	※ 반드시 기재	이 메 일
시 군 구 정 보	담 당 부 서 명			담 당 자 명	
	전 화			팩 스	
위와 같이 『백년전통시장 육성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상인회장	_____ (인)
				() 시·군·구 단체장	_____ (인)
위와 같이 『백년전통시장 육성사업』 시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 시·도 단체장	_____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p>※ 제출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임2] 사업 계획서 1부(필수) • [붙임8]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동의자 명부(토자건물) 1부(필수) •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필수) • [붙임9] 동의여부 서명부(상인) 1부(필수) • [붙임4] 컨소시엄 참여 서약서 1부(필수) • [붙임10] 상인현황 1부(필수) • [붙임5] 컨소시엄 구성 1부(필수) • [붙임11] 전통시장 개설 확인서 1부(필수) • [붙임6] 지방비 확보 협약서 1부(필수) • [붙임12]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대상점포 현황 1부(선택) • [붙임7] 백년시장 육성사업 추진 동의 및 상생협약서 1부(필수) • [붙임13] 투자협약서(선택) 					

【붙임 2】 사업 계획서(원본작성용, 제출 시 직인을 찍어 스캔본 첨부)(필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사업계획서

시장명 :	
-------	--

20 . . .

상 인 회 : (직인)

기초지자체 : (직인)

I

시장 일반현황

1. 시장 일반현황 및 상권특성

시장명	* 전통시장 인정서 등에 명기된 정확한 시장명 표기					
소재지						
개설일	등록/인정일					
시장유형 (복수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상설시장 <input type="checkbox"/> 도매(형)시장 <input type="checkbox"/> 5일장(장날: ,) <input type="checkbox"/> 기타()					
개설주체	<input type="checkbox"/> 법인시장 <input type="checkbox"/> 개인시장 <input type="checkbox"/> 공설시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인회	점포 현황	영업점포(노점, 빈점포 제외) () 개 영업점포 중 사업자 등록 점포 () 개, ()% * 지자체 확인 필수				
	상인회 가입률	영업점포 () 개 중 가입 점포 () 개 = 가입률()% * 영업점포(노점, 빈점포 제외)				
	회비 납부율	①납부단위 : <input type="checkbox"/> 월 <input type="checkbox"/> 분기 <input type="checkbox"/> 반기 <input type="checkbox"/> 년 ②납부금 (원/회) ③회원 ()명 중 ()명 납부 * 납부율 = ()% *공고 게시일 기준 가장 최근 값 적용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구분	①영업 점포	②가맹제한업종 점포수	③가맹가능 점포수	④지류 가맹점포 수	⑤충전식카드형 가맹점포 수
	값					
① 점포현황 영업점포(A)와 일치 ② [붙임기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점포 현황자료에서 확인되는 값과 같아야 함 ③ 가맹가능 점포 수 = ①영업 점포 - ②가맹제한업종 점포 수 ④ 지류 가맹점포 수 ⑤ 충전식카드형 가맹점포 수						
경영 현황	시장일평균 매출액	'22년(만원/일) → '23년(만원/일) → '24년(만원/일)				
	시장일평균 고객수	'22년(만원/일) → '23년(만원/일) → '24년(만원/일)				
판매구성	※ 판매 비중이 높은 품목과 핵심포(유명점포) * 판매 비중 : (예) 농산물 - 수산물 - 음식점 순 * 핵심포(유명점포) : (예) 칼국수집, 분식집 등					
상권특성	※ 예)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 (시.군.구 단위), 초광역권 중심(시.도 단위 이상)					
경쟁점포현황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 **사업기간** : 20. . ~ 20. . (3년간)

· **사업비** : 총 0,000백만원 ※ 빈 칸 없이 총 합계가 맞도록 작성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자부담이 없는 경우는 줄 삭제			
계				

· **사업동의현황** : 상인·임대인 각 1/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동의율	
전통시장 내 전체상인	전통시장 내 임대인
00명 / 총 00명 (동의율 00.0%)	00명 / 총 00명 (동의율 00.0%)

※ 빈 칸 없이 작성, '붙임 8', '붙임 9'과 인원 수가 일치해야 함

사업개요

·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해당 여부** 해당 해당없음

전통시장 명	영업 점포수 (A)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현황			비율 (F=B/A ×100)
		계 (B=C+D+E)	화재공제 가입점포 수 (C)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수 (D)	

※ 가점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만 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 가입현황 인정 기준일은 공고일을 포함하여 이전일자만 인정

※ 영업점포 수는 'I. 기초조사서'의 전통시장 영업점포 수와 일치해야 함

※ 해당 전통시장의 영업점포 대비 화재공제사업과 민간화재보험 가입률을 근거로 산출

※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증빙자료 '별첨 10'과 '별첨 11' 제출

· **전통시장 협동조합 설립 여부** 해당 해당없음

협동조합명	대표자명	인가일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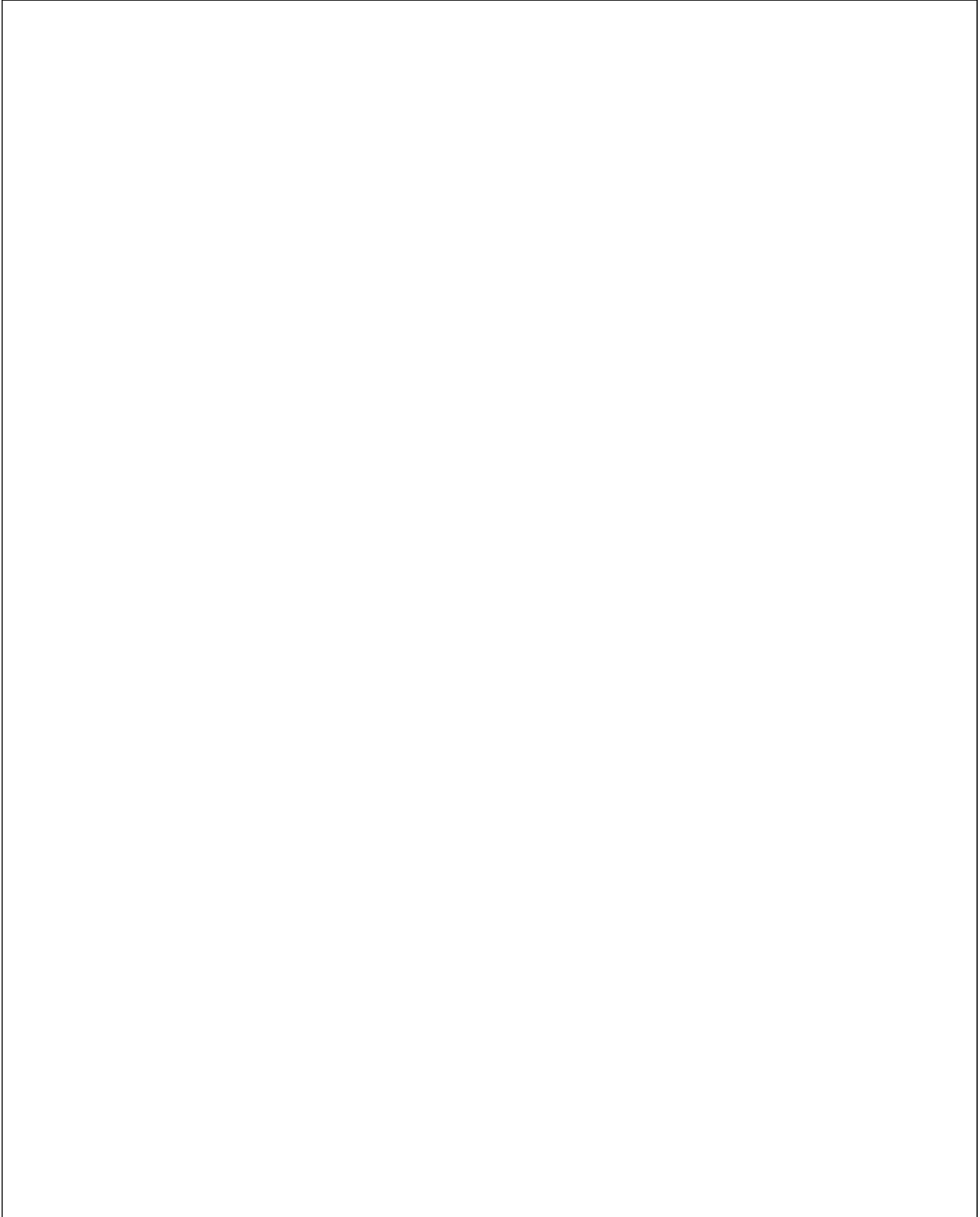
※ 빈 칸 없이 작성, 협동조합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일치해야 함

○ **판매 품목 비율 및 주요 점포**

구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 식품	의류 신발	가정 용품	음식점	기타 소매업	합계
점포수									
비율(%)									

<첨부> 시장 구역도

- * 시장의 정확한 구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지도를 활용하여 시장 범위 표시(주요 끝 지점에 점포명 또는 건물명을 표기하여 확인하기 쉽도록 표기)



* 예시 참고

<예시> OO시장 구역도



* 상기 지정도는 예시일 뿐, 사실과 다를 수 있음

2. 시장 설립 역사

□ 시장 연혁

○ 최초 시장이 개설된 배경

-

-

○ 현재 시장 모습이 만들어진 역사

-

-

○ 시장 등록/인정

-

-

□ 향후 발전 방향

○ 비전/가치

-

-

○ 향후 100년 시장이 갖는 목표

-

-

* 양식 자유롭게 추가하여 작성 가능

□ 기존 사업의 성과확산 및 사후관리 현황

○ 현재 유지·관리 상태(자체평가)

- 사업 종료 후 매출 및 고객수의 증감 유무(정량수치 포함)

-

○ 그간 성과유지를 위한 노력

-

-

-

○ 성과유지 관련 주요 이슈사항

-

-

○ 사업 종료 후 매출 및 고객수의 증감 유무(정량수치 포함)

-

-

II 사업 추진 계획 요약

□ 추진 개요

- (사업기간) (1차년도) '25. 1월 ~ '25. 12월,
(2차년도) '26. 1월 ~ '26. 12월
(3차년도) '27. 1월 ~ '27. 12월
- 사업비(안): 총 000,000,000원

구분	국비	지방비	총 사업비
1년차			
2년차			
3년차			

* 지원시장 최종 선정 결과에 따라 사업비 변동 가능

- (주요특징) ※시장 고유 특장점 위주 작성

□ 추진 목표

- ◆ 시장 상황 및 여건 등을 고려, 사업목표, 방향 등을 간략하게 기술
- ◆ 총 사업기간의 단계적, 최종목표를 정성적·정량적지표 등으로 개략적 제시
- ◆ 반드시 성과가 측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여 작성

- (정량)

핵심지표	AS-IS(전)	TO-BE(후)	기대 효과
000			

- (정성)

□ 추진 전략 및 체계

-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운영기관 및 협력기관 등의 추진전략 및 체계를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

□ 주요 사업내용

○ 연차별 사업내용

- ◆ 연차별 사업목표 및 주요 사업내용 등을 간략하게 기술
- ◆ 연차별 사업목표 및 주요 사업내용 동일하게 작성 지양, 차별성 있게 기술

구 분	연차별 사업목표	주요 사업내용 등
1년차 (20**년)	○	○
2년차 (20**년)	○	○
3년차 (20**년)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1 년 차	(단위1) OO사업	OOOO	○ ○ ○ ○ ○ ○ - ○ ○ ○ ○ ○ ○
	(단위2) OO사업	OOOO	○ ○ ○ ○ ○ ○ - ○ ○ ○ ○ ○ ○
	(단위3) OO사업		
	(단위4) OO사업		
2 년 차	(단위1) OO사업		
	(단위2) OO사업		
	(단위3) OO사업		
	(단위4) OO사업		
3 년 차	(단위1) OO사업		
	(단위2) OO사업		
	(단위3) OO사업		
	(단위4) OO사업		

Ⅲ 사업 추진 체계도

비전 ※ 백년시장을 통해 달성하고 싶은 지향점 제시

추진목표	1년차	2년차	3년차
	※ 전통시장 보유 자원(문화·역사적 가치 등) 분석 등을 통해 연차별 추진 목표 제시 • •	• • •	• • •

구분	세부추진과제
1년차	※ 컨소시엄 구성원 별 역할을 포함하여 연차별 세부 추진 과제 제시 • •
2년차	※ 컨소시엄 구성원 별 역할을 포함하여 연차별 세부 추진 과제 제시 • •
3년차	※ 컨소시엄 구성원 별 역할을 포함하여 연차별 세부 추진 과제 제시 • •

기대효과	• • •
성과유지관리	• • •

	참여기관	본사소재지	연락처	역할
컨소시엄 구성	지자체(필수)			
	지자체 산하기관(필수)			
	상인회(필수)			
	로컬크리에이터(필수)			
	대학(선택)			
	민간기업(선택)			
	상권기획자(선택)			
	기타			

※ **(작성요령)** 1p 이내로 작성하되 당해연도 사업추진 통해 타시장과 차별화 되는 해당 시장만의 특화컨셉, 달성목표를 반드시 작성(양식 변경 가능)

IV 사업 추진 계획(안)

1. 상인회 조직구성

○ 운영현황

구분		세부 내용			
구성인력		명	◦사무국장 명, 매니저 명		
전용공간 (사무실)		전체 면적	m ²	전용면적	m ²
		세부내용 주소	◦상담실 면적 m ² , 회의실 : m ²		
교육	교육장	전체 면적	m ²	전용면적	m ²
		세부내용 주소	◦ 교육실 m ² (***)좌석), PC실 : m ²		
		전체 면적	m ²	전용면적	m ²
		세부내용 주소	◦ m ²		

○ 주요연혁

-

-

○ 조직도 및 조직구성

◆ 상인회 조직도 편성, 역할구분 등

-

-

○ 운영역량

◆ 시장 상인과의 유대관계, 상인회비 납부현황, 지자체 및 사업단과의 협력관계, 사업 추진실적, 사업 운영과 관련한 상인회의 특징과 장점 기술(운영역량)

◆ 시장 상인들의 공청회, 사업설명회 등 자발적 사업추진 의지 제고 활동 기술

-

-

2. 시장 기반시설 현황

○ 시설 및 장비 인프라 보유 현황 (신청일 기준)

항목	수량	용도	도입형태 (임차 또는 자산)	기존 활용	신규 도입 (예정)
방송스튜디오	1	시장 안내	자산취득	○	
CCTV	5대	시장 내 방범	임차		○
아케이드	1	비가림막			
화장실					
주차장					
고객센터					
관광안내소					
교육장					
소방시설					

○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 가능 시설 및 공간 현황

◆ 현재 활용중인 공간과 향후 개발 가능한 공간(빈점포 등) 등에 대해 위치와 활용 방안 기술 - 예시) 실내·외 무대, 공연장, 이벤트 광장 등

-
-
-

○ 시장 내 희망 기반시설

구분	항목	수량	용도	소요예산
안전관리	CCTV	5대	시장 내 방범	

- 지원 필요성
-
-

3. 시장 특장점(강점)

시장 특화요소

- ◆ 시장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지원 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강점 기술
- ◆ 시장의 특장점을 활용한 백년시장 육성사업 추진 방향 제시

○

○

○

상권환경 매력도

- ◆ 시장 대내외 당면환경
- ◆ 시장 주변 집객요소의 매력도, 반경 1km이내 상권의 인구수 등 기술
- ◆ 시장 평균 유동인구 수, 유입 관광객 수 등 통계자료 활용하여 기술

○

○

○

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 ◆ 우리시장에 대한 지원필요성 및 정부지원 시 기대되는 효과
 - 정량적·정성적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통계자료 적극 활용)

○

○

V

세부 사업추진 계획

- ◆ (수행전략) 백년시장의 문화·역사적 가치를 활용한 브랜드 구축, 지역 랜드마크 도약,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 연차별(3년 간 사업수행 계획 포함) 사업계획 작성 (세부사업은 시장별 프로젝트 주제와 연계된 3~5개 사업으로 구성)
- ◆ (지원제외) 개별점포 직접지원, 연속성이 없는 행사(1회성), 건물주 및 상인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동의율50%미만), 사행성 시설 등

1년차

□ (단위사업 1)

○ 사업목적

-

○ 주요내용

-

-

○ 추진방안

-

-

-

○ 소요예산

(단위: 천원)

세부과업	추진내용	세부항목	단가	수량	단위	금액
계						

○ 기대효과(목표, 성과 등)

2년차

□ (단위사업 1)

○ 사업목적

-

○ 주요내용

-

-

○ 추진방안

-

-

-

○ 소요예산

(단위: 천원)

세부과업	추진내용	세부항목	단가	수량	단위	금액
계						

○ 기대효과(목표, 성과 등)

3년차

□ (단위사업 1)

○ 사업목적

-

○ 주요내용

-

-

○ 추진방안

-

-

-

○ 소요예산

(단위: 천원)

세부과업	추진내용	세부항목	단가	수량	단위	금액
계						

○ 기대효과(목표, 성과 등)

□ **단위사업별 전체 추진일정**

◆ 사업추진내용을 기재하고 추진일정 표시, 추진일정을 작성(양식 수정가능)

구분	사업내용	추진일정						기간 (주)
		8	9	10	11	12	1	
1								
2								
3								
4								
5								

VI 연차별 사업관리 계획

1. 지자체의 사업지원 계획

지방비 확보 방안

◆ 선정시 지방비 확보계획 작성(확보시기, 확보가능 금액)

○

○

사업예산 외 지자체의 추가 지원계획

◆ 사업신청 부서(경제과)와 관련 부서(관광정책과, 시설과, 건축과 등)간 부서별 지원계획 기술(영업허가, 소방, 상하수도, 건물 안전 등)

○

○

2. 사업 성과유지 및 확산방안

◆ 사업 종료 이후 성과 유지 및 지속성, 자발성 제고 등 사업 유지를 위한 연차별 구체적 방안 기술

○

○

○

3. 사업 및 시장 홍보방안

- ◆ 사업 전·후 및 진행기간 동안 일반상인과 방문고객, 지역민 등에게 사업을 홍보하여 시장 방문객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 ◆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방안, 보도자료 작성·배포 횟수등 구체적 추진방안 기술

4. 향후 성과 사후관리방안

◆ 사업종료 후, 모든 성과물이 지자체의 소유로 이관됨에 따라 성과를 지속 유지하고, 후속관리 할 사후관리계획에 대한 구체적 방안 기술

VII 사업예산 및 산출내역(안)

◆ 백년시장 : 3년 간 최대 40억원(최대금액으로 작성)

* 간접비 한도 총 사업비의 20% 이내 편성

** 향후 간접비 한도 등 예산 편성 조정될 수 있음

사업 총 예산 : _____ 천원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안)

(단위 : 천원)

구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산출내역	금액	비고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합 계					

* 사업유형 별 간접비 최대한도는 상기 예산편성 기준 참고하여 산출

VIII

기대 효과

핵심 추진과제 성과

◆ 사업 수행을 통한 우리시장만의 뚜렷한 차별화 요소를 기술

○

○

주요 정량적 성과

◆ 사업 수행을 통한 정량적 성과 기술

- 시장 전체 매출액 증가율 : 00%
- 시장 전체 방문 고객수 증가율 : 00%
- 방문고객의 해당시장에 대한 만족도 : 00%
- 해당시장 특화요소 고객인지도 개선률 : 00%
- 5대 서비스 혁신 과제 개선율 : 00%

주요 정성적 성과

◆ 사업을 통한 정성적 성과 기술(구체적 결제 편의성 증대, 시장 이미지 개선 등)

○

○

컨소시엄 참여 서약서

사 업 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대표단체:

참여단체: ○○○○외 ○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의 컨소시엄 구성원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① <u>단체명(기관명)</u>	대표자명	(직인)
② <u>단체명(기관명)</u>	대표자명	(직인)
③ <u>단체명(기관명)</u>	대표자명	(직인)
④ <u>단체명(기관명)</u>	대표자명	(직인)
⑤ <u>단체명(기관명)</u>	대표자명	(직인)
⑥ <u>단체명(기관명)</u>	대표자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지방비 확보 협약서

우리 _____시(도) 및 _____시(군, 구)는
_____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
하는 20 년도 백년 전통시장 사업에 선정 시 지방자
치단체가 부담해야하는 사업비 50%를 해당 연도에 이
상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_____시·도지사 : (직인)

_____시군구청장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8】 백년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동의자 명부(토지·건물)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동의자 명부
(○○시장 토지·건물주)**

아래 명부에 서명한 토지·건물주 ()등 ()명은 ○○시(도)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20 년 ○○시장 백년시장 육성사업 사업계획에 동의하며 적극 협조 할 것을 약속합니다.

< 동의자 명부 >

No	구분	성명	사업계획 확인여부	동의 비동의	서명
1	건물주 or 토지주		(O / X)	동 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input type="checkbox"/>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필요시 칸 추가하여 작성 가능

20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9】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동의여부 서명부(상인)(필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동의자 명부
(○○시장 상인)

아래 명부에 서명한 ○○시장 상인 ○○○ 등 ○○명은 ___시(도) ___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20 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사업계획 및 상생협약에 동의하며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No	업종	상호명	주소	성명	동의 여부	서명
1					○ / X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제출방법

1. 본 서명부는 스캔하여 PDF 파일은 공문 송부하되, 원본은 별도제출
2. 본 명단을 엑셀로 정리하여 '서식 9' 별도제출(상권 내 전체 상인 성명이 기재돼야 함)

20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순번	점포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온누리 상품권 가맹유무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가맹유무	상인회 가입 유무	회비 납부 여부	보험 가입 여부	
								화재공제 (공단)	화재보험 (민간)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순번	점포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온누리 상품권 가맹유무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가맹유무	상인회 가입 유무	회비 납부 여부	보험 가입 여부	
								화재공제 (공단)	화재보험 (민간)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작성 칸 부족 시 추가 가능

전통시장 개설 확인서

우리 _____시(도) 및 _____시(군, 구)는
_____시장의 개설일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전통시장 개설 등을 확인하는 증빙 자료 제출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점포등록증, 상인회등록증 등) 제출

- 전통시장명 :
- 개설일 :
- 시장주소 :

20 년 월 일

_____시·도지사 : (직인)

_____시군구청장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12】 은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대상점포 현황(선택)

총 제한업종 점포수	_____개
------------	--------

연번	점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표준산업분류기준)	상인회 가입 여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작성 칸 부족 시 추가 가능

<참고1> 온누리상품권 등록 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가맹점 제한업종 (전통시장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4제2호 관련)
46102	담배 중개업
46109	골동품, 귀금속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한다)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6492	귀금속 도매업
46722	귀금속광물 도매업
47221	주류 소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5621	주점업 [생계형 기타주점업(56219)은 제외]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9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69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법무
712	회계 및 세무
71520	지주회사
71531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5	교육서비스업
86	보건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성인용게임장 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생계형은 제외)
91249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비고 : 주점업 및 노래연습장 운영업에서 제외되는 생계형에 대한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인 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을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투 자 확 약 서

우리 _____(투자자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에서 지원하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선
정을 위해 _____(전통시장명)에 투자를 확약
합니다.

2025년 월 일

(대표기업명)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참고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증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증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증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증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구분	융자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